

# 예산총칙

2016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09,124,368	27,273,731
일반회계	821,608,508	24,648,255
특별회계	87,515,860	2,625,476
기타특별회계	87,515,860	2,625,47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15,820	9,475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73,051,464	2,191,544
수질개선 특별회계	297,028	8,911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901,205	27,036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820,489	24,615
주차장 특별회계	2,495,986	74,880
기반시설 특별회계	87,314	2,619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42,554	1,277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9,504,000	285,12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5,965,655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해대책 및 복구비